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15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황명선 · 박균택 · 이재관
이해식 · 김병주 · 강득구
백선희 · 박용갑 · 손명수
김현정 · 이학영 · 박홍배
박 정 · 박정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73년 유신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되면서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어 왔음.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전역자들조차 병적상 해군으로 분류되는 등 정체성 문제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본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국군의 조직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하여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하고,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정의하여 기존의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 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함으로써 작전의 전문성을 법문화하였음. 또한,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그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시켰으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국방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를 “해상작전을 주임무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8조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군참모총장”을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중 “공군”을 “공군·해병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각군 부대”를 “각군 등 부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군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 감독 및 합동작전 ·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u></p> <p>③ (생략)</p> <p>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생략)</p> <p>② <u>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 · 훈련을 한다.</u></p> <p>③ · ④ (생략)</p> <p><u><신설></u></p> <p>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p>	<p>제2조(국군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각군 및 해병대</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해상작전을 주임무로</u>-----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 · 훈련을 한다.</u></p> <p>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p>

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 ② (생략)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생

참모총장,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

②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

-----.

<삭 제>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 및 해병대의-----

-----.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군 및 해병대-----
-----.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현행과

